



지원대상

-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
 - 다만,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
 - ①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 - ② 일반·무도유희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」 제2조 해당사업주
 - ③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
 - 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 -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(사업장)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%를 초과하는 사업(사업장)



지원요건

-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
 - ① (계획수립)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
 - ② (참여신청서 제출 및 사업승인) 사업(장)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
 - ③ (실근로시간 감소)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

④ (근태관리) 전자카드, 지문인식,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·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

- *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는 날이 '월 3일'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, 해당자는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,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함
- *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(고장일 당일 포함) 초과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시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

지원수준 및 한도

- (지원수준)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
- (지원 인원 및 한도) 지원 대상 근로자수의 30%, 최대 100명 한도 단,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

❖ 예시 : '24.1.10.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회사의 '23.12.31.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명이었으나, '24.2.1. 단축 시행 후 100명 중 10명이 퇴사하여 '24.2.29. 기준 90명이 되었다면 '24.2월 지원 대상 근로자는 90명(단, 단축 시행 후 신규 고용자는 포함되지 않음)
→ 따라서, '24년 2월 지원 인원은 27명(지원 대상 근로자 90명 × 30%)

- (지원 대상 근로자)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달의 말일*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** 중 단축 시행 해당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이 유지중인 자
 - * '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'을 의미
 - ** 정규직, 기간제, 일용직 등 근로 형태, 내·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단축 시행 직전 달의 말일 기준 재직 중인 피보험자를 의미(단, 예술인·노무제공자 제외)
-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경우라도,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

- 다만,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및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

-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 -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
 -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종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
 - ④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
 - ⑤ 사업주(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(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자)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자는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단축 시행 후 1년 기간 중 각 해당월의 시작일부터 종료일(1개월이 되는 날)까지 피보험자격이 유지 중인 근로자임(해당월 중간 입·퇴사 근로자는 실근로시간 산정대상에서 제외)

* 지원대상 근로자와 실근로시간 산정 대상 근로자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유의

❖ 실근로시간 단축 산정방식

(단축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) - (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)

* 소수점 이하 버림

*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.3주로 나눔

* '단축 시행 전 3개월'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임

지원기간 및 신청

- (지급기간 및 주기)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, 3개월 단위
- (온라인 신청)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신청